[2007년] [2회추경] [세 출]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사회복지 세항:(2313)가정복지 세세항:(120)경상적경비 [본청][단위:천원]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2000 사회개발비		50,432,650	51,970,705	△1,538,055	[국 20,259,832 시 16,098,243 구 14,074,575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300 사회보장비		50,432,650	51,970,705	△1,538,055	[국 20,259,832 시 16,098,243 구 14,074,575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310 사회복지		50,432,650	51,970,705	△1,538,055	[국 20,259,832 시 16,098,243 구 14,074,575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313 가정복지		50,432,650	51,970,705	△1,538,055	[국 20,259,832 시 16,098,243 구 14,074,575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100 경상예산		364,853	398,633	△33,780	[국 48,484 시 0 구 316,369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120 경상적경비		316,369	350,149	△33,780	
	201 일반운영비	179,074	207,294	△28,220	
		179,074	202,294	△23,220	01 일반운영비 ○희망스타트 운영 △23,2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0 - 23,220 = △23,220 (구) 0 - 23,220 = △23,220 ㅇ희망스타트마을 프로그램 운영 = △2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0 - 20,000 = △20,000 (구) 0 - 20,000 = △20,000 ㅇ희망스타트마을 구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= △3,22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0 - 3,220 = △3,22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구) 0 - 3,220 = △3,220
		0	5,000	△5,000	02 행사운영비 ○희망스타트마을 운영 토론회 = △5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0 - 5,000 = △5,000 (구) 0 - 5,000 = △5,000
	301 일반보상금	32,840	38,400	△5,560	
		32,840	38,400	△5,560	01 사회보장적수혜금 ○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= △5,56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32,840 - 38,400 = △5,560 (구) 32,840 - 38,400 = △5,560
200 사업예산		50,067,797	51,572,072	△1,504,275	[국 20,211,348 시 16,098,243 구 13,758,206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210 보조사업		48,857,199	50,310,920	△1,453,721	[국 20,211,348 시 16,098,243 구 12,547,608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
	101 인건비	55,440	0	55,440	
		55,440	0	55,440	10 일시사역인부임 ○기초노령연금업무보조인력수당 = 55,440 (국) 55,440
	301 일반보상금	6,978,467	7,615,322	△636,855	

[2007년] [2회추경] [세 출]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사회복지 세항:(2313)가정복지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6,935,467	7,572,322	△636,855	01 사회보장적수혜금
					○입양아동 양육보조금 = 5,9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15,032 - 9,132 = 5,900 (국) 10,522 - 6,392 = 4,130 (시) 4,510 - 2,740 = 1,770
					○아동복지시설 아동용돈 지원 = 4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21,100 - 20,700 = 400 (시) 21,100 - 20,700 = 400
					○소년소녀가정 지원 = △6,6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10,200 - 16,800 = △6,600 (시) 10,200 - 16,800 = △6,600
					○입양아동 양육수당 = △276,4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178,400 - 454,800 = △276,400 (국) 124,880 - 318,360 = △193,480 (시) 53,520 - 136,440 = △82,920
					○아동발달지원계좌 = 26,6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50,000 - 23,400 = 26,600 (국) 35,000 - 16,380 = 18,620 (시) 15,000 - 7,020 = 7,980
					○노인교통수당 = △165,394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4,375,126 - 4,540,520 = △165,394 (시) 2,187,563 - 2,270,260 = △82,697 (구) 2,187,563 - 2,270,260 = △82,697 ○경로연금 = △221,361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2,165,609 - 2,386,970 = △221,361 (국) 1,515,926 - 1,670,879 = △154,953 (시) 454,778 - 501,264 = △46,486 (구) 194,905 - 214,827 = △19,922
	307 민간이전	37,049,753	39,974,445	△2,924,692	
		256,362	250,112	6,250	01 의료및구료비 ○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= 6,25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190,000 - 183,750 = 6,250 (국) 152,000 - 147,000 = 5,000 (시) 38,000 - 36,750 = 1,250
		32,844,611	35,869,966	△3,025,355	02 민간경상보조 ○보육시설 운영비 △2,923,004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29,464,392 - 32,387,396 = △2,923,004 (국) 14,732,196 - 16,793,698 = △2,061,502 (시) 7,366,098 - 8,396,849 = △1,030,751 (구) 7,366,098 - 7,196,849 = 169,249

[2007년] [2회추경] [세 출]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사회복지 세항:(2313)가정복지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
					ㅇ종사자 인건비 = △768,698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6,181,910 - 6,950,608 = △768,698
					(국) 3,090,955 - 3,475,304 = △384,349
					(시) 1,545,478 - 1,737,652 = △192,174
					(구) 1,545,477 - 1,737,652 = △192,175
					ㅇ민간시설 교재교구비 = 14,052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218,720 - 204,668 = 14,052
					(국) 109,360 - 102,334 = 7,026
					(시) 54,680 - 51,167 = 3,513
					(구) 54,680 - 51,167 = 3,513
					ㅇ차량운영비 = △2,4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2,400 - 4,800 = △2,400
					(국) 1,200 - 2,400 = △1,200
					(시) 600 - 1,200 = △600
					(구) 600 - 1,200 = △600
					ㅇ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= △124,08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4,119,432 - 4,243,512 = △124,080
					(국) 2,059,716 - 2,121,756 = △62,040
					(시) 1,029,858 - 1,060,878 = △31,020
					(구) 1,029,858 - 1,060,878 = △31,020
					ㅇ평가인증시설 지원 = 12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110,000 - 98,000 = 12,000

[2007년] [2회추경] [세 출]
장:(2000)사회개발비 관:(2300)사회보장비 항:(2310)사회복지 세항:(2313)가정복지 세세항:(210)보조사업 [본청][단위:천원]

과목	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	
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						
					(국)	55,000 -	49,000 =	6,000
					(시)	27,500 -	24,500 =	3,000
					(구)	27,500 -	24,500 =	3,000
					ㅇ저소득층 보육료			△2,053,878
					· 법정저소득층 보육료(1층)		=	△415,944
	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	2,182,652 -	2,598,596 =	△415,944
					(국)	1,091,326 -	1,299,298 =	△207,972
					(시)	545,663 -	649,649 =	△103,986
					(구)	545,663 -	649,649 =	△103,986
					· 차상위층 보육료(2층)		=	△3,504,264
	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	2,942,794 -	6,447,058 =	△3,504,264
					(국)	1,471,397 -	3,223,529 =	△1,752,132
					(시)	735,698 -	1,611,764 =	△876,066
					(구)	735,699 -	1,611,765 =	△876,066
					· 차차상위층 보육료(3층)		=	951,086
	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	3,584,912 -	2,633,826 =	951,086
					(국)	1,792,456 -	1,316,913 =	475,543
					(시)	896,228 -	658,457 =	237,771
					(구)	896,228 -	658,456 =	237,772
					· 차차차상위층 보육료(4층)		=	577,460
						[경 정]	[기 정]	[증 감]
						2,255,908 -	1,678,448 =	577,460
					(국)	1,127,954 -	839,224 =	288,730
					(시)	563,977 -	419,612 =	144,365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구) 563,977 - 419,612 = 144,365
					· 차차차차상위층 보육료(5층) = △680,88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1,089,840 - 1,770,720 = △680,880
					(국) 544,920 - 885,360 = △340,440
					(시) 272,460 - 442,680 = △170,220
					(구) 272,460 - 442,680 = △170,220
					· 무상보육료(만5세아, 장애아) = 115,86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4,950,256 - 4,834,396 = 115,860
					(국) 2,475,128 - 3,017,198 = △542,070
					(시) 1,237,564 - 1,508,599 = △271,035
					(구) 1,237,564 - 308,599 = 928,965
					· 두자녀보육료 = 902,804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1,825,568 - 922,764 = 902,804
					(국) 912,784 - 461,382 = 451,402
					(시) 456,392 - 230,691 = 225,701
					(구) 456,392 - 230,691 = 225,701
					○보육교사 처우개선비 = △37,6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102,800 - 140,400 = △37,600
					(시) 51,400 - 70,200 = △18,800
					(구) 51,400 - 70,200 = △18,800
					○셋째아 보육료 지원 = △37,454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69,346 - 106,800 = △37,454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시) 34,673 - 53,400 = △18,727
					(구) 34,673 - 53,400 = △18,727
					○전문요양시설 운영 = △38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0 - 38,000 = △38,000
					(시) 0 - 38,000 = △38,000
					○무료요양시설 운영(소규모) = 4,368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94,368 - 90,000 = 4,368
					(시) 94,368 - 90,000 = 4,368
					○경로당 여가프로그램 = △529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3,471 - 4,000 = △529
					(시) 3,471 - 4,000 = △529
					○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= 33,213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341,826 - 308,613 = 33,213
					(시) 341,826 - 308,613 = 33,213
					○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 = △66,409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175,200 - 241,609 = △66,409
					(시) 74,414 - 79,469 = △5,055
					(구) 100,786 - 162,140 = △61,354
					○경로당 운영비 = 40,06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1,116,870 - 1,076,810 = 40,06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(시) 345,946 - 345,946 = 0
					(구) 770,924 - 730,864 = 40,060
		3,948,780	3,854,367	94,413	05 민간위탁금
					○아동복지시설 운영 = 1,35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836,007 - 834,657 = 1,350
					(시) 836,007 - 834,657 = 1,350
					○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종사자 특별수당 = △7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740 - 1,440 = △700
					(시) 740 - 1,440 = △700
					○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= △2,1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31,500 - 33,600 = △2,100
					(시) 31,500 - 33,600 = △2,100
					○노인일자리사업(위탁형) = 80,13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937,054 - 856,924 = 80,130
					(국) 468,527 - 428,462 = 40,065
					(시) 468,527 - 428,462 = 40,065
					○차상위실비입소 이용료 = △19,563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
					33,607 - 53,170 = △19,563
					(국) 23,525 - 37,219 = △13,694
					(시) 10,082 - 15,951 = △5,869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시설종사자 특별수당 = 2,2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14,440 - 12,240 = 2,200 (시) 14,440 - 12,240 = 2,200 ○독거노인결연자 만남의 행사 . = △1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900 - 1,000 = △100 (시) 900 - 1,000 = △100 ○결식노인무료급식소운영 = △33,213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536,755 - 569,968 = △33,213 (시) 308,613 - 341,826 = △33,213 (구) 228,142 - 228,142 = 0 ○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도시락배달사업 = 66,409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241,609 - 175,200 = 66,409 (시) 79,469 - 74,414 = 5,055 (구) 162,140 - 100,786 = 61,354
	402 민간자본이전	4,675,628	2,623,242	2,052,386	
		4,675,628	2,623,242	2,052,386	01 민간자본보조 ○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(3개소) = 500,000 (국) 250,000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	
						(시)	250,000
					○전문요양시설 신축(1개소)	=	1,552,386
						(국)	776,193
						(시)	776,193
220 자체사업		1,210,598	1,261,152	△50,554			
	401 시설비및부대비	471,098	719,652	△248,554			
		461,725	711,152	△249,427	01 시설비		
					○학림경로당 환경정비	=	7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		
					27,000 - 20,000 =		7,000
					(구) 27,000 - 20,000 =		7,000
					○용봉동 용문경로당 신축(특별교부금)	=	96,127
					○북구 아동복지관 부지매입	=	△150,000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		
					0 - 150,000 =		△150,000
					(구) 0 - 150,000 =		△150,000
					○공공어린이집 등 놀이시설 설치(특별교부금)	=	△202,554
					[경 정] [기 정] [증 감]		
					0 - 202,554 =		△202,554
					(구) 0 - 202,554 =		△202,554
		1,373	500	873	03 시설부대비		

과목 장.관.항.세항.세세항	목	예산액	기정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	○용봉동 용문경로당 신축(특별교부금) 97,000,000 x 0.009 = 873
	402 민간자본이전	288,000	160,000	128,000	
		288,000	160,000	128,000	01 민간자본보조 ○오치동 상오치경로당 신축(특별교부금) = 98,000 ○공립보육시설 설치 = 30,000
	405 자산취득비	451,500	381,500	70,000	
		451,500	381,500	70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 ○용봉동 용문경로당(특별교부금) = 90,000 ○공립보육시설 설치 = △20,000 [경 정] [기 정] [증 감] 0 - 20,000 = △20,000 (구) 0 - 20,000 = △20,000
세 출 합 계		50,432,650	51,970,705	△1,538,055	[국 20,259,832 시 16,098,243 구 14,074,575 균 0] [기 0 분 0 채 0 교 0]